

한진칼 거버넌스위원회 규정

제정 2019년 11월 8일

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한진칼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이사회 산하 거버넌스 (Governance)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,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함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단, 위원 중 3인 이상,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
제4조 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출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- ③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,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 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위원장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직무대행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참석자 중 선임 위원, 연장자의 순으로 주재하기로 한다.

제5조 (임기 및 해임)

- ①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 임기내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.
- ② 위원의 해임은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서 한다.
- ③ 위원의 해임·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조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 이사회는 지체없이 충원을 해야 한다.

제6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4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주일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소집 목적, 일시,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늦어도 회의일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③ 필요한 경우 이사회 또는 다른 위원회와 연석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, 회의의 연기나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다. 이러한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8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9조 (권한)

- ① 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중 주주가치 및 주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래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한다.

- 회사의 합병, 분할, 주식의 포괄적 교환·이전
-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 및 자산의 양수도
(회사 자기자본 금액의 100분의 1.5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에 한함)
- 신주의 발행, 준비금의 자본전입, 자본감소, 주식의 액면분할 및 병합
-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, 주식배당, 주식소각
- 주주 외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, 교환사채 등 특수사채의 발행
- 회사의 자회사 설립, 매각, 주권(또는 코스닥) 상장 및 타 법인에 대한 출자
(회사 자기자본 금액의 100분의 1.5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에 한함)
- 기타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경영사항

② 위원회는 회사의 내부거래에 대해 아래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- 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, 상법, 이사회규정 등에 따라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내부거래를 심의·의결한다.
-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, 관련 사업의 주요 내용, 계약방식 및 거래 상대방 선정기준,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.
- 위원회는 법령 및 회사의 규정에 중대한 위반이 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,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
제10조 (의무)

① 위원회는 심의 내용 및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회의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의사록에는 심의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심의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11조 (이사회 통지)

- ①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결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사회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위원회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, 이사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 단, 결의사항을 통지 받은 이사가 그 사항 통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 결의사항의 재결의를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사는 원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제12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 간사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자가 이에 임한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회 사무전반을 담당한다.

제13조 (경비)

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.

제14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[부칙]

1. 본 규정은 2019년 11월 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